

# 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0
----------	-----

제출일자 : '97. 11.

제출자 : 제천시장

## □ 개정사유

-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감면조례는 금년말로 자동폐지됨)

- 국가유공자·장애인·교육 및 주택건설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되, 조세정책 목적이 달성된 짐형승용자동차 감면과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감면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하여는 감면조례에서 적용시한을 연장하지 아니하거나 삭제하고
- 중소기업지원센타, 신용보증조합, 지방공사등 국가정책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는 세제지원 규정을 신설하며
- 기타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등 감면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 <내부부 지방세감면조례개정 일괄허가('97. 10. 10)에 의함>-

## □ 주요골자

### 1. 세제지원 감면규정 폐지

#### (1)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사용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 하던 규정이 지방세법 제289조제3항에 규정되어 삭제함

## (2)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짚형승용자동차가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감면조치하였으나, 현재 대부분 레저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에 여유가 있는 자들이 구입하고 있고, 또한 일반승용자동차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시한을 연장하지 아니함

## II.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 신설

### (1)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되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함 (안 제21조)

### (2)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고, 동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함 (안 제22조)

### (3)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동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함 (안 제23조)

### (4)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함 (안 제24조)

### III. 미비한 조문 개선 · 보완

#### (1)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인 국가유공자가 배기량 2,000㎤씨이하 승용자동차 1대를 구입하여 본인명의로만 등록하여야 자동차 세를 면제하던 것을  
    ⇒ 본인이외에 배우자 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제도록 하며,
- 국가유공자가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에 기존 승용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 새로운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등록 등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도록 함 (안 제2조 제2항)

#### (2)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 국가유공자단체가 수의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함에 있어, 국가유공자단체의 범위를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였던 것을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3조)

### (3)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의 경우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배기량 2,000㎤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를 본인명의(부모 또는 배우자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 본인(부모 또는 배우자 포함)명의 외에 세대별주민등록 표상의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제도록 하며 (안 제4조 제1항)
-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에 기존 승용 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등록 등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도록 함 (안 제4조 제2항)

### (4)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등이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던 것을  
    ⇒ 일반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토록 함 (안 제13조)

### (5) 마을공동체소유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 공동체소유의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대하여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함 (안 제15조)

## IV. 기타 용어 정리등

관련 개별법령 및 지방세법에서 용어를 개정함에 따라 감면조례  
상의 용어등 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안 제2조제2항)

- 교통부 ⇒ 건설교통부 (안 제8조제3호)

- 사용승인일 ⇒ 사용승인서교부일 (안 제13조)

- 사용검사일 ⇒ 사용승인서교부일 (안 제16조)

- 과세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안 제17조제3호)

## V. 적용시한이 연장되는 감면규정 : 불임

## VI. 개정근거

- 내무부 세제13400-337('97. 10. 10) - 지방세 감면조례개정 조례  
(안)일괄허가

- 도 세정13400-1033('97. 10. 10) - 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통보

## VII. 개정조례안 : 불임

# 제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천시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충청북도지방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11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2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4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 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6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 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7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연간수입금액}}{\text{영업기간(일수)}} \times 365$$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8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6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19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1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22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4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7장 보 칙

제25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세에 관한 사무는 육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26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제천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

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  
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  
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별지서식>

충청북도제천시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소				
감면내용	세목	연도/기분	당초세액	감면세액
감면사유	충청북도제천시세감면조례 ○○조			
충청북도제천시세감면조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제천시장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전문접수번호	8156
10월 17일	1201

6·7·1431  
5·8

## 충청북도

우360-765 충북청주시상당구문학동89 / 전화(043)220-2312 행2312 / 전송2319 담당:이강근

6·7·1431  
5·8

문서 번호 세정13400 - 1033

선 결	368			지 시
접 수	일자 시작	... 10. 17		결 재 · 공 립
	번호	2946		
처리 과 6부문				
담당자 3·7·13				

수 신 일자 01 ~ 12  
참 조 세정(재무)과장

### 제 목 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통보

1. 내무부 세제 13400 - 337('97. 10. 10)호와 관련입니다.

2. 현행 시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자동폐지되게 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장애인등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연장하되, 짚형승용자동차 감면, 고속 철도건설 사업에 대한 감면등 조세정책목적이 달성되거나 지방세법에 규정된 분야는 삭제하는등 시군세감면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시군세 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별임과 같이 통보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협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하기 바랍니다./

붙 임 충청북도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부(별송). 즐.

### 충청북도지



내무국장전결

문서최종처리기관 : 시군까지

전	FAX	신문 번 2411
문	내선일자	기자수 확인 00
	1997. 10.	

## 내 무 부

우110-760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종합청사 /전화 (02) 731-2510 /전송731-2516

문서번호 세제13400-337

시행일자 1997. 10. 10.

경유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세정과장

선 결 점	세정과장	지 시 결
일자	1997.10.	시 시 결
시간		지 지 결
수 번 호	7019	재 재 결
처 리 과	세정과	공 공 결
담당자		람 람 결

제목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일괄허가

1. 세제13400-250('97.7.24)호의 지방세감면조례 일괄조정허가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감면조례 조정의견과 부산세무13400-191('97.8.8) · 경기세정13400-1395('97.7.16) · 전북세정13400-633('97.7.2) · 충북세정13400-577('97.6.12) · 연기군재무13430-2131('97.7.12) · 광양시세정13400-1282('97.9.30)호의 지방세 감면조례개정허가 신청사항 및 정부 관계부처에서 지방세감면조례에 반영을 요청한 사항 등을 시·도 담당공무원 참여하에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첨부와 같이 일괄허가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하기 바랍니다.

2.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 중 이번에 일괄허가하는 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와 같이 함께 승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특별시(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부.  
 2. ○○특별시(광역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부.  
 3. ○○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부.  
 4. ○○도○○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부.  
 5.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개정요구사항중 미조정사항 검토의견 1부. 끝.

내 무 부 장

수신처 : 나01~07, 10~18.



## 현행('97 적용)감면조례와 개정('98 적용)감면조례와의 대비표

감 면 조 레 명	현행('97 적용) 감면조례	개정('98 적용) 감면조례	개 정 사 유
제2조 <안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 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 계획세를 면제하고,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u>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u> <u>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u> <u>면제</u></li> <li>○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가 <u>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u>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u>&lt;후단 신설&gt;</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면제하되, <u>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규정은 삭제함</u></li> <li>○ <u>본인외에 배우자 또는 세대별주민등록표</u> <u>상의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제로록 함</u></li> <li>○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차량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승용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 하였던 승용차를 이전등록 등을 하는 경우 에는 승용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1가구2차량에서 제외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조례(안) 제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규정으로 삭제함</li> <li>○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자활의지 도모</li> <li>○ 기존 소유 차량의 대 폐차시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 하는 모순을 해소함</li> </ul>

감면 조례명	현행('97 적용) 감면조례	개정('98 적용) 감면조례	개정 시 유
제3조 <안 제3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단체(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법규의 구체화</li> </ul>
제4조 <안 제4조> 장애인소유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장애인(시각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이 본인명의(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등록 포함)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각각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li> <li>○ &lt;신설&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부모 또는 배우자명의 등록 포함) 외에 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제로록 함</li> <li>○ 장애인이 취득한 차량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승용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였던 승용차를 이전등록 등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1가구2차량에서 제외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로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활의지 고취</li> <li>○ 기존 소유 차량의 대·폐차시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을 해소함</li> </ul>

감 면 조 례 명	현행('97적용) 감면조례	개정('98적용) 감면조례	개 정 사 유
제5조 <안 제5조>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집단촌안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 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및 축사용 부동 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 계획세 면제	○ 좌 동	
제6조 <안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의료법인에 의한 의 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 좌 동	
제6조의2<안 제7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 경감	○ 좌 동	
제7조 <안 제8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노동교육원등이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 좌 동	
제8조 <안 제9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 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 좌 동	

감 면 조 례 명	현행('97적용) 감면조례	개정('98적용) 감면조례	개 정 사 유
제9조 <안 제10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보호법, 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50% 경감</li> </ul>	○ 좌 동	
제10조 <안 제11조> 향교재단 소유재산 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0분의 1로 하고</li> <li>○ 또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 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 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0분 의 3으로 함</li> </ul>	○ 좌 동	
제11조 <안 제12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거환 경개선사업 등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 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등 사업계획 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 상자가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5 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li> </ul>	○ 좌 동	

감면조례명	현행('97적용) 감면조례	개정('98적용) 감면조례	개정사유
제12조 <안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에 대하여 재산세는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1,000분의 3으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복리시설중 일반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토록 함</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복리시설에 대하여 면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모순 해소</li> </ul>
제13조 <안 제14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농어촌특산품생산 단지 등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아파트형공장의 설립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 경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ul>	
제14조 <안 제15조> 마을공동체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회동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공동체소유 자동차중 <u>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과세토록 함</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으로 승용 자동차를 마을공동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li> </ul>

감면 조례명		현행('97적용) 감면조례	개정('98적용) 감면조례	개정 사유
제15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안제16조>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파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되 주차영업의 최초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주차시설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지방세 추징	○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 신고를 하고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되, 주차영업의 최초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주차시설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지방세 추징	○ 주차장에 대한 감면을 건축물과 토지로 구분하여 면제토록 함으로써 감면 적용의 명확화
	<안제17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신고를 하고 설치한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부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일 이후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면제	○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 신고를 하고 설치한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설치일 이후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면제	○ 지방세법에서 용어를 개정한 것에 따른 것임
제16조 <안 제18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50% 경감	○ 좌동		
제17조 <삭제>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 사업에 사용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사업소세(종업원할) 면제	○ 삭제		○ 지방세법 제28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

감면 조례 명	현행('97 적용) 감면조례	개정('98 적용) 감면조례	개정 사유																	
제18조 <삭제>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의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함</li> </ul>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배기량</th> <th colspan="2">씨씨당 세액</th> </tr> <tr> <th>영업용</th> <th>비영업용</th> </tr> </thead> <tbody> <tr> <td>2,000씨씨이하</td> <td>10원</td> <td>160원</td> </tr> <tr> <td>2,500씨씨이하</td> <td>12원</td> <td>180원</td> </tr> <tr> <td>3,000씨씨이하</td> <td>12원</td> <td>200원</td> </tr> <tr> <td>3,000씨씨초과</td> <td>15원</td> <td>230원</td> </tr> </tbody> </table>	배기량	씨씨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2,000씨씨이하	10원	160원	2,500씨씨이하	12원	180원	3,000씨씨이하	12원	200원	3,000씨씨초과	15원	23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짚형승용자동차가 산업용으로 분류 되어 감면조치 하 였으나, 현재 대부 분 레저용으로 사 용되고 있을뿐만아 니라 자금에 여유 가 있는 자들이 구 입하고 있고, 또한 일반승용자동차 소 유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폐지</li> </ul>
배기량	씨씨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2,000씨씨이하	10원	160원																		
2,500씨씨이하	12원	180원																		
3,000씨씨이하	12원	200원																		
3,000씨씨초과	15원	230원																		
제19조 <안 제19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 지세 50% 경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ul>																		
제19조2 <안제20조> 재래시장재개발 ·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래시장재개발 ·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시장재개발 · 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의 50% 를 경감하고,</li> <li>○ 또한, 시장재개발 ·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50% 경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ul>																		

감면 조례명	현행('97적용) 감면조례	개정('98적용) 감면조례	개정사유
<안 제2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신설>	○ <u>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되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함</u>	○ 공공성이 강한 공공법인이나 자치 단체가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감면 함으로써 공익목적 달성을 도모
<안 제22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신설>	○ <u>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고, 동 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면제</u>	○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치 단체가 출연한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안 제23조>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에 대한 감면	○<신설>	○ <u>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동 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면제</u>	○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해 주기위해 건립하는 동센타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
<안 제24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	○ <u>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참고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의 50% 경감</u>	○ 유통산업의 활성화 도모